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11. 29(화)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7
제출일자	2022.10.27.
회부일자	2022.11.0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선희 의원 외 15명

2.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2021년 기준 22.7%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도내 고령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기준 경기, 서울 다음으로 높은 3,030건의 수치를 보임.
- 이에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 뿐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동권 보장과 함께 교통편의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경북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노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가준 등을 규정함(안 제5조)

4. 관련법령

- 가. 「지방자치법」
- 나. 「지방재정법」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아.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5.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가. 비용추계: 362억원(도비 108억원)
- 나. 규제심사: 해당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7.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나아가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재정지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과 이와 관련한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5조(이용요금 할인율 등)는 노인,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상별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율(제5조 관련)

구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만 70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아동·청소년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1일 무료횟수 3회)
3. 등록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 종합 검토의견

- 안 제2조(정의)에 해당 조례의 대상이 되는 “노인등”을 ①만 70세 이상인 사람 ②아동·청소년 ③장애인 및 보호자 ④독립유공자 및 유족 ⑤국가유공자 및 유족 ⑥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참고로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경우에도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을 무료 혹은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임.

- 노인, 장애인 등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위의 법령 등을 바탕으로 교통복지 측면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을 받는 대상을 조례와 같이 규정한 것은 그 취지와 목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수송시설 이용요금 관련 법령]

<p>「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	--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p>
<p>「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p>	<p>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p>	<p>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p>이용하는 자</p> <p>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p>	<p>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 안 제4조(재정지원)에서는 노인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과 이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버스업체 손실지원금		112	362	362	362	1,198
	교통카드시스템개발비	72					72
	무암카드 발급비		28				28
	소계(b)	72	140	362	362	362	1,298
□ 총 비용(a-b)		-72	-140	-362	-362	-362	-1,298

○ 우선, 1,2차년도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교통카드시스템개발비와 사업의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3차년도부터 노인(414,697명), 장애인(247,782), 국가유공자(52,881)¹⁾를 지원하게

1) 2022.6월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 현황

되면 연 362억원(도비 108억원)²⁾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³⁾, 비용추계에 빠진 어린이·청소년으로 지원 범위가 늘어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돼 향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노인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의 이동권 증진과 함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도비30%, 시·군비 70% 기준

3) 조례안 비용추계 대상 총 715,360명 (어르신414,697 / 장애인247,782 / 국가유공자52,881)